

부산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4가단31162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10.

판결 선고 2024. 10. 1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83,294,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5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채권자는 원고로,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반호림

별지